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탄 소 소 재 용 복 합 기 술 개 발 및
기 반 조 성 지 원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
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「탄소
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
률 제 17279호, 2020. 5. 19. 공포, 11. 20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
위임된 사항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시작·중단 시 보고
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) ① 법 제9조의2 제7항의 규
정에 의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 수익사
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
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진흥원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
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) ① 법 제9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</u> <u>② 진흥원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284